

기 조 연 설

사서자격 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안

곽 동 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wackdc@cju.ac.kr

목차

- I. 사서자격 제도의 도입 및 성립 개요
- II. 사서자격 제도의 시기별 변화 추이
 - 1. 도서관법(1963)의 시기
 - 2. 도서관법의 개정(1987)과 이후의 시기
 - 3. 도서관진흥법(1991)의 시기
 - 4. 도서관및독서진흥法(1994)의 시기
 -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改正(2003)과 이후의 시기
 - 6. 도서관법(2006)과 교도서관진흥법(2007)의 시기
- III. 사서 등 자격 취득 요건 및 양성체계
 - 1. 사서자격 취득과 양성체계
 - 2. 사서교사와 사서실기교사의 자격요건
 - 3. 사서자격증의 발급 및 소지 현황
 - 4. 사서직원 등 양성과 취업문제
- IV. 사서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V. 향후 사서자격 및 전문성 강화 전략

I. 사서자격 제도의 도입 및 성립 개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서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¹⁾ 및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²⁾의 내용에 의하면 조선교육회가 1931년에 주최한 제1회 강습회이다. 그 이후 조선도서관연맹이 1939년에 결성되어 사서 교육 관련 강습회를 주도하였지만,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이 교육을 주관하였다. 이 강습회는 194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다. 일제의 항복으로 해방과 동시에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들은 1945년 말부터 미군정청 학무국장이었던 록카드(E.N. Lokard) 등과 협의하여 국립도서관 소속으로 후에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1946년 4월 1일에 개교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스스로 사서직원 양성교육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 도서관학교에서는 1946년 8월 31일 제1회 졸업생(20명)을 배출하였다. 그 다음 해부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4년간 총 77명이 배출되고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 4월에는 국립도서관과 조선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제1회 ‘도서관사업강습회’를 10일간 개최하였다. 이 강습회에 총 57명의 현직사서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1948년 10월에 제2회, 1950년에는 제3회 강습회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한국동란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의 운영권이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넘어오면서 원활한 경영을 위해 부족한 사서직원의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 이후 연세대학교에 국내 최초의 4년제 도서관학과 및 대학원 석사과정이 1957년에 개설됨으로써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한국도서관학당도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과 그 당시 교육 사절단으로 내한하여 연세대학교에 파견되었던 조지피바디사범대학(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의 도서관계 인사들의 도움이 지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도서관학 교육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대학수준으로 격상시켜 사서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의 도서관학과 개설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테면, 이화여대(1959년), 중앙대(1963년), 성균관대(1964년)가 각각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여 사서양성을 위한 학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사서자격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경북대(1974년), 숙명여대(1976년) 대구가톨릭대(1976년), 강남대(1978년) 및 1979년에 신라대, 청주대, 충남대에 각각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서울 : 동 도서관, 2006).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서울 : 동 협회, 2005).

학부과정으로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부터 양적 확대를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사서직원 양성교육을 위해 모두 33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및 8개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도서관과)가 설치·운영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³⁾ 그동안 도서관법도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쳐 2006년 지금의 도서관법으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도서관법과 사서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그 시기별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둘째, 사서 등의 자격 취득 요건과 양성체계를 살펴봄, 셋째,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서자격 제도의 시기별 변화 추이

1. 도서관법(1963)의 시기

한국의 사서자격제도는 1963년 10월 28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에 의해 최초로 확립되었다.⁴⁾ 이 법률의 제6조 제2항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26일자로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에서 사서직원의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사서와 준사서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196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64호)과 1969년 11월 3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4191호)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①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중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며 사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사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은 그 자격에 따라 이를 정사서와 준사서로 나눈다.

②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8개교 가운데 계명문화대학교와 동부산대학이 폐교가 되고, 현재 6개교의 대학(대림대학, 동원대학, 부산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음.

4) 이병목, 도서관법규총람 전2권(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2005) 및 이하 도서관 관련 법규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이상 이수한 자.
 3. 준사서로서 사서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이상 이수한 자.
- ③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초급대학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이상 이수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이상 이수한 자.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과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조 [도서관업무의 강습]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실시의 요청이 있거나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6조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에서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도서관의 건물면적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6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과 대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500인이하인 때에는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00인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②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는 그 도서관건물면적이 330평방미터이하인 때에는 3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65평방미터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이와 함께 동법시행령 부칙에서 국립도서관학교의 졸업자와 연세대학교부설 한국도서관학당(동대학교부설도서관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간 이상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는 정사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3년이상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도서관실무실습을 50시간이상 이수한 자도 준사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시행령의 시행당시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공무원(사서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196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64호)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 및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1969년 11월 3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4191호)에서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및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의 내용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술한 도서관법시행령에 대해 1966년 3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172호) 제5조 [강습기관의 지정범위] 및 제6조[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도서관학의 강습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대학, 국립중앙도서관,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도서관단체는 도서관학의 강습기관으로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서관학강습기관의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다음의 제6조[교육과정]의 별표(교육과정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동법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236호(1969. 7. 19) 및 문교부령 제369호(1975. 11. 5)로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별표〉 교육과정표

필수과목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 도서관사, 목록법, 분류법, 도서선택,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선택과목	도서관학개론, 서지학개론, 도서관과 사회, 도서 및 인쇄사, 저작권법, 고서목록법, 비도서자료, 도큐멘테이션,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한국서지, 시청각자료, 근세한국주제별사료, 사서실습

비고: 1. 령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과목중 3과목을 선택한다.
 2. 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을 면제하고 선택과목중 5과목을 과한다.

2. 도서관법의 개정(1987)과 이후의 시기

1963년에 제정되었던 「도서관법」을 1987년 11월 28일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서관운영을 위해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였다.

“제7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은 1급 정사서·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어서 1988년 8월 16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 제4조 '별표 2'에서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4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2〉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학교도서관	1. 국민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를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전술한 도서관법시행령에 대해 1989년 3월 25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570호) 제7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사서자격교육기관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지정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사서자격교육과정은 다음의 별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비고: 필수과목중(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3. 도서관진흥법(1991)의 시기

「도서관법」의 대체법률로서 19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이러한 사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였다. 즉, 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모두 3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존 도서관법 제7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하였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법 제7조 제1항과 동일
 ②도서관법 제7조 제2항과 동일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 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어서 1991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에서도 기존 도서관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4조 〈별표 2〉에서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제4조에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단서 규정과 함께 기존 <별표 2>의 상기 2개 관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포되었다. 그리고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별표 3> 내용 가운데 소속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교부령’과 ‘문교부장관’이 ‘문화부령’과 ‘문화부장관’으로 수정되었고,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거의 대부분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이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으로 순서를 바꾸어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원이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서관에 근무해야 하는 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제4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2>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 한 사람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대해 1991년 7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문화부령 제7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도서관법시행규칙」제7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과정] 가운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만 남겨두고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다음의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다. 즉,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중전의 범규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부설한 사서자격교육기관(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1965년 문교부>,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1989년 문교부>)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에 관한 내용 및 신청양식을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절차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1997년에 문화체육부는 부산여자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을 사서자격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에서 기존의 교과목외에 필수과목으로 각급 자격별로 저작권 교과목<저작권(I), 저작권(II), 비교저작권론>이 추가되었다.

〈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저작권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저작권론(I)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비고: 필수과목중(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의 시기

1991년에 제정되었던 「도서관진흥법」을 폐지하면서, 1994년 3월 23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94년 7월 23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39호)이 제정되었고, 1994년 8월 1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16호)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존 「도서관진흥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1항과 동일
 ②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과 동일
 ③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3항과 동일
 ④문고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은 기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4조 <별표 2>에서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제5조 <별표 3>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여기서 동법시행령은 제4조에서 기존 내용 외에 제2항을 신설하여 문고에 관한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별표 2>는 기존 내용을 거의 변화 없이 수용하였다. 또한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별표 3>의 내용 역시 기존 내용에서 2

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및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제시되었고, 소속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화부령’과 ‘문화부장관’이 ‘문화체육부령’과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제4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 체육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 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16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조문 내용은 이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과 같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에서 기존의 교과목외에 필수과목으로 준사서 및 2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독서지도 교과목<독서지도(I), 독서지도(II)>이 추가되었다.

〈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저작권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독서지도론(I) 저작권론(I)	
--	---	--

비고: 필수과목중(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2003)과 이후의 시기

2003년 5월 29일자로 기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90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27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4호)이, 2003년 12월 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82호)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6조에서는 기존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반영하였으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도 사서직원의 배치기준과 자격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전 시행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3월 17일자로 다시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은 기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4조 <별표 2>에서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을, 제5조 <별표 3>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여기서 동법시행령은 제4조 제1항에서 기존 내용 외에 병영도서관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별표 3>의 내용 역시 소속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화체육부령'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관광부령'과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제4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 등"이라고 한다) 및 병영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체육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 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82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조 문 내용은 이전의 법규와 같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저작권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독서지도론(I) 저작권론(I)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비고: 필수과목중(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6. 도서관법(2006)과 학교도서관진흥법(2007)의 시기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자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이, 2007년 4월 4일자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여기서 「도서관법」 제6조에서는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폭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

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제4조 및 제5조를 합쳐서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다. 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및 제5조 <별표 3>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서 함께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4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에서는 지금까지 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왔던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9호(2007년 4월 11일)에 의거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으로 고시되었다. 이 고시에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며,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전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문고	공립문고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을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1조 제1항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 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따른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상기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제2호의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797호에 의거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1조 제1항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 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따른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2007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677호)은 각 관종별 도서관 관련 법령의 입법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학교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작업에 앞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다음은 국회에서 최종 가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사서 인력 및 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원안과 수정 가결 후 공포된 내용이다.

원안	수정 가결 후 공포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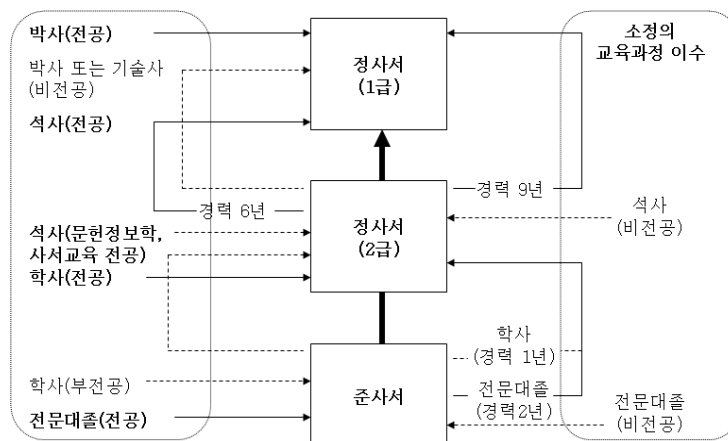
이처럼 최종 공포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최초 발의한 법안의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를테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 인력을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뿐만 아니라 사서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다.

Ⅲ. 사서 등 자격 취득 요건 및 양성체계

1. 사서자격 취득과 양성체계

현재 국내의 사서인력 양성기관은 4년제 학부과정이 33개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24개교와 14개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17개교, 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이 2개교이다. 그리고 6개 전문대학(대림, 동원, 부산여자, 송의여자, 인천전문, 창원전문)의 문헌정보과에서도 준사서를 양성하고 있으며, 부산여자대학은 1997년부터 사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서직 인력은 이미 필자가 다른 연구논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⁵⁾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들을 제외하고도 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양산되고 있다.

국내 사서자격제도에 적용되는 실정법은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및 200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제19963호)이다. 동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으로 4가지, 2급 정사서는 7가지, 준사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1급 정사서는 어느 전문직의 자격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으며, 준사서로부터 출발하여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⁶⁾ 적정한 근무경력이나 일정수준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사서자격증 취득과정

5) 광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1999, 12), pp.157-182.
 6) 윤희윤 등,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p.152.

특히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에 <표 1>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25개 대학(현재 33개교에 설치)에 문헌정보학과가, 3개 전문대학(당시 8개교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2개교는 폐과됨)에 문헌정보과가 집중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비율은 대학의 경우에 78%, 전문대학의 경우도 37%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32개 대학들 중에서 75%에 달하는 24개교에서 일반대학원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대학원과정의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16개교(학부과정이 없는 한양대학교를 포함하면 17개교)에서 설치하고 있다.

<표 1> 한국 사서양성기관(학부, 대학원 등) 현황

(2008년 2월 현재)

대학(교)명	학부 설치연도	대학원 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타
		석사	박사			
1. 강남대학교	1978	2005				
2. 건국대학교	1984					
3. 경기대학교	1983	1999	2001	1998		
4. 경북대학교	1974	1978	1999			
5. 경성대학교	1983					
6. 계명대학교	1980	1989	1999	1998	1989	
7. 공주대학교	1983			1987		문헌정보교육과
8. 광주대학교	1984					
9. 나사렛대학교	2008					전자문헌정보학과
10. 대구대학교	1982	1997		2000		
11. 대구가톨릭대학교	1976	1997		2003		도서관학과
12. 대진대학교	1991	2001		1997		
13. 덕성여자대학교	1980					
14. 동덕여자대학교	1980	1996				
15. 동의대학교	1982					
16. 명지대학교	1980	1989		1994		
17. 부산대학교	1984	1989	1993	2000		
18. 상명대학교	1980	1980	1993	1994		
19. 서울여자대학교	1980	1988				
20. 성균관대학교	1964	1971	1974	1999	1965	
21. 숙명여자대학교	1976	1983	2006	1982설치,1999폐지		
22. 신라대학교	1979			1998		
23. 연세대학교	1957	1957	1980	1979폐지,2003신설	1957설치,1971폐지	한국도서관학당
24. 이화여자대학교	1959	1959	1987	1999폐지		
25. 전남대학교	1980	1992	1998			
26. 전북대학교	1980	1999	2002	2000		

27. 전주대학교	1983	1994				
28. 중부대학교	1994			2003		
29. 중앙대학교	1963	1972	1983	1997		
30. 청주대학교	1979	1984		1995		
31. 충남대학교	1979	1991	2001			
32. 한남대학교	1981	1997				
33. 한성대학교	1981	1998	2006			
(한양대학교)				1980		
소계	32(1)	24	14	17	2	
1. 대림대학	1994					
2. 동원대학	1997					
3. 부산여자대학	1970				1997	
4. 승의여자대학	1972					
5. 인천전문대학	1981					
6. 창원전문대학	1980					
(계명문화대학)	1974					폐과
(동부산대학)	1979					폐과
소 계	6				1	

〈출전〉 광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p.177의 〈표 5〉 전국 사서양성기관 현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이처럼 한국의 사서인력 양성 체계는 크게 자격증과정과 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자격증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서인력 양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에는 문헌정보학 관련 대학의 학부과정,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 전문대학과정이 있다. 또한 한시적 성격의 단기교육과정으로는 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이 있다. 그리고 현직 사서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과정과 달리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과정이 있다. 여기서 사서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의 학부과정은 사서인력 양성의 본산으로서 졸업 후 2급 정사서 자격이,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학부전공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심화학습을 통해 2급 정사서 또는 1급 정사서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교육과정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기존 사서직원의 계속교육 차원이나 상위 사서자격 및 사서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성격과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비사서직원의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과정은 정사서의 보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준사서 양성 과정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 33개 대학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사서직 양성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복수전공에 의한 사서직 양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및 부산여자대학에서는 한시적 성격의 사서교육원을 설

치하여 사서직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사서교육원에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및 사서교사의 자격과정을 설치하여 사서직원 등을 배출하고 있다. 전술한 사서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과정과는 달리 연수과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연수교육과정을,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전에는 국가행정전문연수원)은 사서공무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에 근무중인 사서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자격제도

전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사서자격 인정 문제와 함께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실기교사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교원의 자격종별을 각급 학교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원의 자격종별

학교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등	정교사(1, 2급)
		초등	
		유치원	
		치료교육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실기교사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 관련 자격요건은 1급 과 2급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로 구분한 후 각각 규정되어 있다. 사서교사의 1·2급 자격 구분은 2004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1급)의 경우에는 ①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②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사서교사(2급)의 경우에는 ①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②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③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④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실기교사(사서)의 자격기준은 ①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란에서 같다)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 ②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③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④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표 3]에서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교원자격 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재학중에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면서 사서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50학점을 이수하는 외에 교직과목으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기교사(사서)의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서 교과내용영역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교직과목으로 교직이론 4학점(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2008년도 입학생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한 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자격 종별에 공통적으로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한편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무시험검정으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표 3> 및 <표 4>와 같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요구되는 21학점(7과목)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1.1.28)' [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을 명시하고 있다.

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p.233.

〈표 3〉 사서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07.12.31)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사서교사 (2급)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표 4〉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1.1.28) [별표 1]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교육,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이 가운데 사서교사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1급 및 2급 사서교사로 구분한 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1·2급 자격 구분은 2004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사서교사(2급)의 경우에는 ①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②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③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④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서교사의 검정기관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상기 ①, ③, ④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②항의 경우에는 '교육감'으로 지정되어 있다.⁸⁾ 그리고 사서교사(1급)의 경우에는 ①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②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자격은 위에서 기술한 몇 가지 방안을 통해 취득할 수 있지만,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해 부여되는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각 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계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이나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84년부터 가급적 교직과

8)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6.

정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사범계대학 등에서 양성되는 과목, 이를테면 중·고교 공통필수 또는 과정별 필수과목에 대한 교직과정 설치승인 신청을 지양하고 있다.

현재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해당전공 학생수의 10-30% 범위에서 제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경우에도 최근에 교직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생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하였고, 차기연도부터는 다른 전공분야와 마찬가지로 10%로 더욱 감소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5호)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2007. 12.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2호)에 의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자는 상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별표 3>에서와 같이 전공과목으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영역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직과목으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서실기교사의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서 교과내용영역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교직과목으로 교직이론 4학점(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2008년도 입학생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자격 종별에 공통적으로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처럼 사서교사 자격 인정 문제는 사서교사의 양성과 관련하여 그 사서교사(2급)의 자격기준 가운데 ②항을 삭제한다면 사서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서 자격 인정 문제와는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서 자격의 인정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서교사 자격의 인정은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닌 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과 통합이나 학부제 운영의 경우를 대비하여 교직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사서자격증 발급 및 소지 현황

국내에서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대학 문헌정보학과(전공) 또는 도서관학과(전공),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자격제도가 법제화되어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1966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발급 현황은 <표 5>와 같이 총 63,463명이며, 자격증별로 인원수 및 비율은 1급 정사서 1,411명(2.2%), 2급 정사서 36,408명(57.2%), 준사서 25,824명(40.6%)이다.

9)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p.233.

〈표 5〉 한국의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07년 12월말 현재)

연도	자격증의 종류			소계	누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갱신**		
1966~75		1,410		1,251	2,661
1976		212		305	3,178
1977		132		428	3,738
1978		144		491	4,373
1979		176		609	5,158
1980		268		685	6,111
1981		368		685	7,164
1982		226		814	8,204
1983		389		1,078	9,671
1984		579		873	11,123
1985		1,014		835	12,972
1986		1,248		633	14,853
1987		1,459		719	17,031
1988		1,558		732	19,321
1989		1,653		712	21,686
1990*	63	1,516		580	23,845
1991	54	1,587	(30)	774	26,260
1992	140	1,510	(1,611)	678	28,588
1993	100	1,467	(2,345)	841	30,996
1994	43	1,376	(31)	663	33,078
1995	51	1,353	(14)	758	35,240
1996	58	1,358	(17)	854	37,510
1997	43	1,255	(10)	719	39,527
1998***	35	1,310	(18)	783	41,655
1999	88	1,405	(16)	896	44,044
2000	55	1,396	(19)	986	46,481
2001	80	1,368	(24)	920	48,849
2002	75	1,471	(14)	984	51,379
2003	106	1,381	(28)	949	53,815
2004	96	1,420	(33)	1,030	56,361
2005	81	1,418	(26)	917	58,777
2006	105	1,449	(18)	841	61,172
2007	138	1,532	(12)	801	63,643
계	1,411	36,408	(4,266)	25,824	63,643

〈출전〉 상기 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1990년부터 정사서 자격증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 ()안은 종전의 정사서 자격증을 2급 정사서 자격증으로 갱신 발급한 숫자임.

*** 1998년 8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5,864호)에 의거하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로 이관되었음.

이처럼 2007년 12월말 현재 국내에서 63,643명이 사서자격증의 발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도서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도서관연감 2007년판에 의거하면 약 16%에 해당하는 10,1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6>에서와 같이 공공도서관 2,842명, 대학도서관 2,644명, 전문도서관 1,040명, 학교도서관 3,200명, 국립중앙도서관 254명, 국회도서관 203명이 도서관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국내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총수는 15,967이므로, 도서관 종사자 중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각 관종별 도서관의 사서직원을 포함한 직원수 및 사서자격증 소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 도서관의 관종별 직원수 및 사서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관종별	사서직			행정직	기타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공공도서관	2,560*				977	2,686	6,223
	194	1,987	661	(2,842)			
대학도서관	2,408				485	811	3,704
	511	1,823	310	(2,644)			
전문·특수도서관	984				573	713	2,270
	116	735	189	(1,040)			
국립중앙도서관**	177				38	87	302
	28	159	67	(254)			
국회도서관	158				50	60	268
	18	127	58	(203)			
소계	6,287				2,123	4,357	12,767
	867	4,831	1,285	(6,983)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사서	비정규사서	(3,200)	-	-	3,200
	424	60	2,716				
총계							15,967
				(10,183)			

<출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동 협회, 2007).

* 사서직 수와 각 자격증 종별 소계의 차이는 도서관의 행정직 및 기능직 종사자 가운데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원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4. 사서직원 등 양성과 취업 문제

한국의 사서직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1957년부터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이 33개교, 2년제 대학이 6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면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들은 도서관법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을 교부받으며, 이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검정령시행규칙에 따라 사서교사(2급) 자격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사서의 수가 연간 거의 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사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공채시험 등을 통해 각 관종별 도서관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분의 사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사임용시험을 거쳐 초·중등학교의 사서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직원의 취업을 더욱 어려워지게 하는 것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학문이 유입되는 초기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서교육원의 계속적인 존치 및 신규인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서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사서교육원의 설치 대학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직 사서의 교육 및 양성과 관련하여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32개 대학 및 6개 대학에서 사서직 인력의 양성을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서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대학에 비해 이로운 점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학에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그 스스로도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서교육원 가운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관은 1963년 국내에서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각급 도서관의 설립이 촉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서직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한시적으로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그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서교육원의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표 7>과 같다.¹⁰⁾

<표 7> 한국사서교육원 졸업생 통계표('65~'96)

과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1965		64	10			74
1966		22	10			32
1967		15	11			26
1968		9	13			22
1969		9	15			24

10) 박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p.178(이러한 통계자료는 이전 논문을 작성할 때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관련 사이트<<http://slisnet.skku.ac.kr/~edu/sub1-2.html>>, <<http://slisnet.skku.ac.kr/~edu/suh1-6.html>> 및 <<http://slisnet.skku.ac.kr/~edu/sub1-7.html>>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색할 수 없음).

1970		10	20			30
1971		13	22			35
1972		28	27			55
1973		27	30			57
1974		27	46			73
1975		34	40			74
1976		46	56			102
1977		51	61	6	55	173
1978		93	139	8	58	298
1979		118	132	28	204	482
1980		151	218	60	185	614
1981		153	120	30	2	305
1982		53	157	30		240
1983		43	137	45		225
1984		66	138	72		276
1985		96	128	58		282
1986		112	112	68		292
1987		97	95	63		255
1988		115	95	60		270
1989				49		49
1990		70	149	31		250
1991	12	52	149			213
1992		41	105			146
1993	6	45	101	32		184
1994		44	141			185
1995		46	92			138
1996	9	43	84	20		156
계	27	1,793	2,653	660	504	5,637

그 동안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 양성한 사서직 인력의 수를 살펴보다도 향후 사서직 인력의 취업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서교육원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5,637명의 사서직을 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27명의 1급정사서, 1,793명의 2급정사서, 2,653명의 준사서 및 660명의 사서교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기관에서는 연간 평균 176명씩 사서직을 양성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배출한 사서 인력의 수를 환산하면 개략적으로 7,000여명(5,637명 + 176명 × 11년 = 7,573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직 사서 인력의 양성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의 존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89년 계명대학교와 1997

년 부산여자대학에 사서교육원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들 사서교육원의 최근 3년간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최근 3년간 사서교육원 사서자격 취득 현황

과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계	비고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성 균 관 대	2006	2월	52	187	239		
		8월					
	2007	2월	56	186	242		
		8월					
	2008	2월	54	183	240		
		8월	2	1			
소계			164	557	721		
계 명 대	2006	2월			48		
		8월	7	41			
	2007	2월				49	
		8월	5	44			
	2008	2월			2	52	
		8월	9	41			
소계			21	128	149		
부 산 여 대	2006	2월			39		
		8월	9	30			
	2007	2월				43	
		8월	7	36			
	2008	2월				48	
		8월	13	35			
소계			9	101	130		
총계			9	205	786	1,000	

이처럼 사서직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의 사서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될 미래의 사서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사서를 양성하는 한시적이어야 할 단기교육기관의 설치 및 중단 문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1957년에 도서관 현장에 근무 중인 도서관원의 재훈련을 위한 특수훈련과정으로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었던 '한국도서관학당'의 경우를 보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도서관학당의 처음 계획은 학부 졸업생이 배출되는 1961년까지 4년간만을 존속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재훈련을 받지 못한 현직 도서관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도서관계의 요망에 의해 예정보다 10년을 더 연장한 1971년 초에 그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서교육원의 존치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사서직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각종 도서관계 회의나 세미나 및 학술대회의 주제로 다루어나가야 할 시점으로 여겨진다.

IV. 사서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는 1963년에 도서관법과 1965년에 도서관법시행령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그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국동란과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확립에는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인 국립도서관과 나중에 한국도서관협회로 개명한 조선도서관협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대하였다.

본고에서 우선, 사서의 양성과 자격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확립 및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은 도서관법(1963)의 시기, 도서관법의 개정(1987)과 이후의 시기, 도서관진흥법(1991)의 시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의 시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3)의 개정과 이후의 시기, 도서관법(2006)의 시기로 나누었다. 이어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사서 자격제도의 시행효과를 살펴보고자, 사서의 양성 체계와 사서 자격 취득,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자격제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과 도서관 재직자의 사서자격증 소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괄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첫째,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법제화는 사서의 전문성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자격종별로 사서직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셋째, 각 관종별 도서관이나 정부부처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에게 각종 전문직 수당과 같이 사서수당을 지급하는 효과를 낳았다.

반면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향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의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일부 모순점을 들 수 있다. 사서직원의 양성과 관련하여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는 필요 이상의 인력을 한시적 성격의 단기교육기관인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서 배출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제 시행으로 과거보다 축소된 이수학점으로 졸업이 가능한 취득학점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격증 부실화가 사서직의 전문성 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즉, 학부

제로 인한 전공과목 이수기준의 하향 조정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불균형, 그에 따른 자격증 교부의 불합리성, 단일전공자와 복수전공자간의 이수학점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¹¹⁾

셋째,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자격증 급수에 따른 조직 내 상하관계를 포함한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 체계는 법규상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자격의 급수와는 거의 관련이 없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즉,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도서관의 경우에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향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서직원 양성과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에서 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을 위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성격의 단기교육과정인 사서교육원의 사서자격을 연계한 사서직원의 양성 기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별표 3]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2호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사서의 양성과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법제상의 모순과 결함도 해결해야 하지만, 학부제 시행으로 이수학점의 축소에 따른 사서직의 전문성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거나 사서직의 국가고시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자격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에서 사서직원의 실제 직급과 사서자격의 급수를 단기간에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직원의 채용이나 승진에서 직급과 사서자격을 연계시켜 나가거나 직급별 사서자격의 급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2008년 2월에 정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정작업에서 평가기준으로 법학도서관과 관련된 사서직원에 대한 기준을 사서자격의 급수별로 재직인원수를 명시한 것은 사서의 양성과 자격제도의 확립에 좋은 선례로 여겨진다.

넷째, 국내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합심하여 사서직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진흥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직원이 수

11) 이계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pp.232-280.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신설 및 내실화를 요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기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이나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민들이 주거지역 근처에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스스로의 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미래의 사서직원 양성을 위한 학습 및 도서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사서자격 제도 개선 등을 비롯한 현안 사항들을 기존의 사서나 도서관 중심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각 학회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에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V. 향후 사서자격 및 전문성 강화 전략

최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계에서는 사서자격 제도와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의 능력과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문헌정보학의 핵심 교과목 명칭 표준화 및 전공 필수과의목 지정이 필요하며, 전공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 학사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용자 대상별·기능별 주제전문사서 도입 및 필수 교과목의 지정이 필요하다.”

“사서 자격증 취득 방법 강화를 위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사서 자격증 부여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

“자격제도의 현실성 유지를 위한 갱신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자격시험제도를 통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사서자격증 취득 후 사서직 임용(채용)시 시험을 봐야하므로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도서관 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을 강화해라 한다.”

“현재와 같이 정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서교육원 과정을 통한 사서 배출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사서교육원 과정을 통한 서서자격증 수여를 중단해야 한다.”

“현행의 정사서, 준사서 제도를 폐지하고, 정사서 1,2,3급으로 재편해야 한다.”

“사서자격제도를 사서의 입장이 아닌 국민(수요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내 사서자격 제도의 현황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하자면,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와 국내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도서관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서자격 제도의 체계와 자격요건의 설정, 자격 취득 방법의 개선,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 과정의 확립 등을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고찰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¹²⁾

첫째,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분석: 지금까지 논의된 국내 사서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주요한 쟁점들을 도출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사서자격제도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특징과 장점 및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의 현행 사서자격제도에 관련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해결하는 데 참조할 사항들을 분석한다.

둘째,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른 사서자격의 재구분: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각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난이도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도서관계의 수요를 조사한다. 또한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른 사서자격 재구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서자격 재구분(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재구분한 사서자격에 따라 각각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도서관 직무의 영역을 명시한다.

셋째, 사서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의 재설정: 사서자격을 재구분함으로써 각 자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적 지식의 내용을 명시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사서직 구분과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국내 도서관 현장의 특성과 고유한 수요를 반영한 자격요건의 요소들을 도출한다. 나아가 사서자격 구분에 따른 사서자격 요건(안)을 제시하여 학계와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사서자격 취득방안에 대한 실효성 조사: 현행 사서자격 취득방안을 개선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질적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한다. 또한 문헌정보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도서관 인턴십과 연수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도서관의 실무 현황과 이용자의 요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헌정

12) 정동렬,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서울 :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이영희,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청주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세훈,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보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사 및 석사수준의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및 필수과목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사서자격 재구분(안)에 따른 새로운 사서직 급별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제도 및 주요 선진국처럼 사서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사서자격 구분에 따른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설정; 사서자격 재구분(안)과 사서자격 취득방안의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의 필수과목, 선택과목, 실습과목(인턴십) 등의 표준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 도서관 관종별 및 사서의 전문영역과 업무별 실습과목(인턴십)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도서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표준적 업무지식을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개정안 제시; 본 연구의 전 과정에서 조사, 분석 및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국내의 제반 도서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개정된 사서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도서관법령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한 선진국 및 UNESCO, IFLA 등 국제기관 및 협회들의 사서자격 관련 법령, 기준(standards)과 지침(guidelines) 등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연구가 추진되고, 그 결과가 도서관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서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사서 전문직의 업무영역과 직급을 재편하고, 난이도별로 과업을 분담하여 서비스 효율과 업무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보다 엄격하고 경쟁적인 사서자격 취득방안을 마련하고,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에 따라 사서전문직의 기본자질 및 전문소양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사서자격이 타 전문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위상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사서직원 자격요건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서들의 경력, 수준과 능력에 적절한 직위, 연봉 및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 재교육 및 자아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설문지사이트 주소 : <http://eflex.cju.ac.kr:8700/scormcont/cflash/work/Online-Poll.htm>

〈=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중)〉

